

오렌지라이프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

(내국법인용-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포함)

※ 국내법인(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포함)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또한,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양도가액의 0.5%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.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

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

- (1) 오렌지라이프 주식과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(2)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, 총 양도가액은 주식교환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신한금융지주 주식수와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주식교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곱한 금액에 단주대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.
- (3)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11% ~ 27.5% 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(4)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건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2.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

- (1) 오렌지라이프 주식과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가액의 0.5%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. 이 때 주당 양도가액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(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격으로서, 오렌지라이프 주식 최종거

래일인 2020년 1월 21일 증가 적용)을 의미합니다.

- (2)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(3) 위 (2)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0년 8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II.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

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

- (1) 오렌지라이프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(2)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, 주당 양도가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오렌지라이프로부터 지급받는 오렌지라이프 주식 1주당 가액(오렌지라이프가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서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가액은 1주당 28,235원)입니다.
- (3)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11% ~ 27.5% 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(4) 본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건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2.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

- (1) 오렌지라이프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(위 제1항 참조)의 0.5%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.

(2)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(3) 위 (2)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0년 8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III. 유의사항

1.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,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2.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 바,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-2200-8944(오렌지라이프 IR부)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